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 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 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2010고합305,2010고합412(병합)]

【전문】

【피고인】

【검사】정유철외1인

【변 호 인】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유재우 외 10인

【주문】

]

- 1.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4), 피고인 6(대법원판결의 피고인 5)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6)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8(대법원판결의 피고인 7)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9(대법원판결의 피고인 8)를 징역 1년에, 피고인 10(대법원판결의 피고인 9)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1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0)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1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1)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1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2)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각 처한다.
-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7, 8에 대하여는 50,000원을, 피고인 12에 대하여는 2,000,000원을, 피고인 13에 대하여는 1,4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3, 11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5, 6, 9, 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8, 12, 13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피고인 2, 9, 10, 11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1, 12, 13에 대한 2009. 2. 2.자 공소외 2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1, 11, 13에 대한 2009. 7. 13. 공소외 8 주식회사 신주인수권 2,200,000,000원 상당 차명행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7에 대한 2009. 12. 29. 공소외 8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합병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는 각 무죄.

〈 2010고합412호 사건 공소사실 및 판단〉

공소사실 판단항피해자 또는 대상범행피고인피해액 또는 부당이익(원)유죄부분무죄부분피고인피해액 또는 부당이익(원)3공소외 2 주식회사(일람표 1)횡령피고인 1, 피고인 280,866,780,82277,366,780,822 횡령3억 배임일부 무죄(이유)(32억 원, 일람표 1 순번 95, 107~109)공소외 4 주식회사(일람표2)횡령피고인 1,피고인 315,105,000,00093억6천만 횡령 7억 6천만 배임일부 무죄(이유)(49억 8,500만 원, 일람표 2 순번 14~20)공소외 5 주식회사(일람표 3)횡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령피고인 1,피고인 217,303,447,153전부 유죄4공소외 8 주식회사배임피고인 1,피고인 2297억전부 유죄공소외 2 주 식회사357억5공소외 2 주식회사(2009. 2. 2. 3자배정 유상증자)장내매수관련 시세조종, 위계,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9,피고인 8(공소외 10)944,338,799피고인 1,피고인 2944,388,799피고인 9, 피고인 8 일부 무죄(이 유)(2008. 11. 25. ~ 2009. 1. 13. 공범 범위 및 액수부분)피고인 9,피고인 8액수불상유상증자 관련 부정한 기교, 거짓 기재(피고인 13 10억, 피고인 12 30억 차입, 차명 및 피고인 12 원금보장 30억 투자)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11,피 고인 13,피고인 122,613,590,185피고인 1,피고인 21,268,351,562피고인 1, 피고인 2 일부 무죄(이유)(공범관계가 인 정되지 않는 피고인 12 이득부분) 피고인 11, 피고인 13,피고인 12 전부 무죄(주문)(2009. 2. 3. 부정한 기교로 인한 범죄는 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고, 2009. 3. 3. 거짓기재로 인한 범죄는 증거 없음)합계피고인 1,피고 인 23,557,928,984피고인 1,피고인 22,212,690,361일부 유죄일부 무죄(이유)6공소외 2 주식회사(2009. 6. 3. 공소외 10과 투자수익보장약정)시세조종,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공소외 10)x전부 유죄7공소외 4 주식회사(2009. 5. 20. 공소외 10 해외자본 10%관련 유상증자 참여)위계, 거짓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공소외 10)x위계, 부 정한 기교 부분 유죄거짓기재 부분일부 무죄(이유)8공소외 8 주식회사(2009. 6. 15. 실권주 피고인 13 차명인수)거짓 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11,피고인 1337,800,255전부 유죄9공소외 4 주식회사(2009. 8. 12. 실권주 40만 주 공소외 6 주식회사 차명 인수)거짓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25,809,133전부 유죄10공소외 8 주식회사 (2009. 7. 13. 신주인수권 22억 상당 피고인 13 차명행사)거짓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11,피고인 13x전부 무죄(주문)11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2009. 10. 29. 공소외 9 주식회사 피고인 13 등 차명인수)공소외 9 주식회사 차명인수관련 거짓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11,피고인 131,323,498,540피고인 1,피고 인 2,피고인 111,323,498,540피고인 13 일부 무죄(이유)(전체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익액도 일부만 인정됨)피 고인 13837,274,540(1,348,750,000 차입금으로 인한 이익)공소외 8 주식회사(공소외 10 등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시 세조종)장내매수 관련 시세조종, 부정한기교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7,피고인 8,피고인 10(공소외 10)4,925,697,622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7,피고인 8,피고인 10 액수불상피고인 7, 피고인 8,피고인 10 일부 무죄 (이유)(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 불가)합계피고인 1,피고인 26,249,196,162피고인 1,피고인 2 액수불상일 부 무죄(이유)12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2009. 12. 29. 합병과정에 차입하여 차명으로 참가)거짓기재, 부정한 기교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11,피고인 5,피고인 6,피고인 13,피고인 12,피고인 4,피고인 78,281,883,155피 고인 1,피고인 2,피고인 117,799,042,615피고인 4, 피고인 7전부 무죄(주문)피고인 1, 피고인 2,피고인 11, 피고인 5,피고인 6, 피고인 13,피고인 12 일부 무죄(이유)(전체공모관계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익액 일부씩만 인정)피고인 5241,423,255피고인 6193,134,425피고인 131,689,942,377피고인 122,897,043,240

[이유]

]

[이유]

1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1